#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68호)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7. 4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7. 16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재무과장 오은겸)

### 가. 개정이유

○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1)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60조)

-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기준 반영

2)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(안 별지)

- (현행) 장애자 → (개정) 장애인

### 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81조(변상금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
  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2093호(2025. 3. 27.)]

4) 기　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642호

- 예고기간: 2025. 3. 31. ~ 4. 21.(21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**○ 제출 사유**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장애인 관련 법령과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간의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임.

**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**

- (안 제60조)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과오납된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,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2회 이내 분할 납부와 100만원 초과 시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반영하였음.

- (안 별지) 공유재산 관리 조례 [별표]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(제46조 관련) 자료 중 4. 군 보건소 시설 구분 중 ‘장애자용 화장실’을 ‘장애인용 화장실’로 법령과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음.

○ **종합 검토 의견**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용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불부합한 [별표]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　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